전자투표제도 및 실시요령에 대한 이해

정문호 전문위원
Tel. 02-2087-7158
jmh@klca.or.kr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09년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즉 정보통신 환경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입법취지에서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 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5년부터 섀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요건 충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자투표제 실시를 조건으로 한 섀도우보팅제도의 적용연장 법안이 부칙개정 형태로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전반적 이해와 함께 구체적 실시에 대비하여 전자투표 실무요령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상법규정을 살펴보고 전자투표 실시를 위한 실무요령을 소개하기로 한다.

* 본 원고는 김순석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2014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2014.11.6.)을 참조 인용하였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http://evote.ksd.or.kr) 인터넷 사이트 게재내용을 참조하였음.

1.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이해

1) 의의

전자투표제도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투표제도는 2009년 5월 상법개정을 통해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신설함으로써 도입되고 2010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용이하게 하고 주주총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상장회사의 경우 이른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섀도우보팅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제도가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회사의 의결권정족수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 전자투표제도의 채택 – 이사회 결의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제368조의4 제1항).

개별 기업의 IT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할 수 있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업마다 IT화 관련 업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이며, 아울러 제도의 도입취지가 주주총회 개최의 효율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관변경보다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하도록 한 것이다.

3)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①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②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

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3항).

4) 의결권의 행사방법

① 주주의 본인확인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68조의4 제3항 및 제6항), 이에 따라 상법시행령에서는 주주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즉, ①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②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③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④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이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주주확인 및 전자투표를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자투표의 보안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확인절차는 기술적이고 늘 변화가 예견되므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다.

→ 전자투표제도가 발달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법 규정에 주주확인의 방법까지 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전자인증이나 전자서명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적 의결권행사 대행기관인 Broadridge사는 ID와 통제번호(Control Number)를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주주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② 전자투표와 서면투표 중 선택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제368조의4 제4항).

즉 상법상 서면투표는 정관 규정에 의해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채택할 수 있는 바, 회사가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동시에 허용한다면 주주는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양자를 모두 허용하는 경우 최종적인 의결권 행사로 인정하는 방식을 미리 정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주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이중으로 행사한 경우 처리방안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서면투표제도가 거의 사문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동시에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의결권의 철회 · 변경

상법시행령은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전자투표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도 전자투표권자는 전자투표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13조 제3항).

그러나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최종투표결과를 가지고 당해 주주에 의한 의결권행사로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주주는 의결권 행사기간(회일 전일)까지 전자투표의 철회 · 변경을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입법론으로는 전자투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의 투표 편의를 위한 제도인데, 발행회사의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어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의결권 행사의 철회나 또는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상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주주 의결권의 행사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총회 출석을 통한 철회나 변경이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④ 수정동의에 대한 처리

주주총회에서 수정동의가 제출될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수정동의에 관한 문제는 서면투표나 찬부가 표시된 위임장의 경우도 동일하게 발생되며, 그 효력에 대해서는 결석설, 제도적 기권설, 기권설, 절충설 등의 학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원안에 대한 찬부에 상관없이 이미 행사된 전자투표를 수정동의안에 모두 기권한 것으로 취급하는 견해가 다수의견이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권자이용약관(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 결석설은 전자투표한 의결권수를 수정안에 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 견해이다. 제도적 기권설은 원안에 찬성한

전자투표는 수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보고, 원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전자투표는 수정안에 기권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기권설은 원안에 대한 찬부에 상관없이 이미 행사된 전자투표를 수정동의안에 모두 기권한 것으로 취급하는 견해이다. 한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전자투표자의 의결권은 섀도우보팅처럼 현장 주주총회 출석자들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취급하는 견해도 제기된다.

⑤ 의결권행사 기한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한다(상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를 하는 주주는 총회 회일의 '전일'까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제14조 제1항)에서는 전자투표기간은 주주총회일 10일전부터 회일 전날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있다.

* 의결권 행사기한에 대해서는 총회 전일의 영업시간 이내로 하자는 견해, 총회 전일의 24시까지로 하자는 견해, 총회 개회 직전까지로 하자는 견해 총회 개회 후 의결 전까지로 하자는 견해 등 다양하다.

실무상 오후 5시까지로 투표기한을 정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것도 권장사항에 불과하지 구속력은 없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전자투표의 행사기한을 보다 명확히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 2005년 일본 회사법의 경우도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총회 전일의 영업시간까지를 마감시한으로 하고 있다(일본회사법 제3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70조).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투표관리기관인 Broadridge사의 의결권행사 사이인 ProxyVote.com은 주주총회 개최 전일 23시 59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5) 전자투표관리기관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368조의4 제4항). 회사 또는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368조의4 제5항). 그러나 이 조항은 제재조치가 없어서 규제의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한 경우 회사 스스로 전자투표를 관리하거나, 전자투표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보면 일부 정보통신기업의 경우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통하여 전자투표나 전자주주총회까지 개최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들은 전자투표를 전자투표관리기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Broadridge사가 대표적이며, 일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을 맡은 두 개의 신탁은행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인터넷 기반의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전자투표관리기관은 법정의 기관이 아니며,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누구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시스템(K-evote)을 구축하고 2010년 8월 23일 전자투표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 〈http://evote.ksd.or.kr〉 참조.

6) 전자 시스템 결함의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

전자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나, 해킹,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의결권 행사 데이터가 훼손되거나 소실된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해석에 맡겨져 있다.

첫째, 전자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주주가 전자투표를 할 수 없는 원인이 주주가 계약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가 다운되거나 통신회선의 장애로 인한 때에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면책되며 따라서 총회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 회사가 전자시스템의 정비, 보수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만일 당해 전자투표의 수가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이 낮고 또한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결의방법의 하자이지만 재량기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반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다수이면 결의취소(정도에 따라서는 결의부존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후 전자투표의 기록이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정족수나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대량의 데이터가 소실 또는 훼손되었다면,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결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손상된 전자투표에 관한 기록이 없어도 정족수나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회사가 적절한 해킹, 바이러스 대책을 시스템상 강구하고 있는 한 결의의 효력에 하자는 없다고 본다.

셋째,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서버가 다운되어 일부 주주가 전자투표를 할 수 없게 되거나,

보안시스템 등의 결함으로 전자투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해킹 등으로 인하여 전자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자투표 결과가 소실되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는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7) 전자적 기록의 보존 등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5항).

2. 전자투표 실시요령에 대한 이해

1) 개요

전자투표의 참가자로는 발행회사, 주주, 전자투표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다.

발행회사는 전자투표를 이사회 결의로 채택한 후 전자투표관리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 정보, 주주명부, 주주총회 결과 등을 전자투표관리기관에 통지한다.

주주는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주주 및 주주총회의 정보관리, 전자투표 집계, 주주총회 결과 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자투표의 이용 현황을 보면 전자투표서비스를 개시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103개사*이며 대다수가 선박투자회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 요약하여 안내하기로 한다.

2) 전자투표의 기본 업무플로어

① 전자투표 채택 :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다.

② 전자투표 신청 :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전자투표를 신청하고, 일정 양식에 따라 주주명부, 안건, 참고자료, 의결권제한내역 등을 등록한다.

③ 전자투표 행사안내 :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주소, 전자투표의 행사기간, 그 밖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공인인증서, PC환경 등)을 주주에게 통지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주주에게 제공한다.

④ 전자투표 행사 : 주주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총회일 10일전부터 회일의 전일까지 전자투표를 한다.

⑤ 전자투표 행사내역 집계 : 전자투표 기한 종료후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집계하여 위탁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의안별 의결권 행사 결과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한다.

⑥ 주주총회 개최 : 회사는 주주총회 개최일에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결과에 산입하여 집계한다. 주주총회 종료 후 최종 결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다.

⑦ 주주총회 결과 조회 : 주주는 회사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⑧ 전자투표 행사내역 기록비치 · 보존 : 회사는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기록을 3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한다.

3) 각 주체별(발행회사 및 주주) 전자투표 활용절차

① 발행회사의 전자투표 관련업무

1) 발행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2) 주주총회 3주전까지 전자투표이용을 신청하고 주주명부 등을 제출한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의 행사기간 등 필요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한다.
3) 주주총회 2주전까지 주주총회 의안, 참고자료, 의결권 제한내역 등을 전자투표시스템에 등록한다.
4) 전자투표 완료 후 의안별 전자투표 결과를 수령한다.
5) 주주총회 완료 후, 주총결과를 통보한다.

②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절차

1) 주주는 발행회사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통지 내역(전자투표 포함)을 수령한다.
2) 주주총회 회일 10일전부터 전일 오후 5시까지 범용 또는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의결권을 행사한다. 전자투표 가능회사를 조회하고 의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주주총회 완료 후 주주총회의 결과를 조회한다.